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2016. 10. 26.  
행정건설위원회

## 1. 심사경과

-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16년 10월 19일 이필레 의원 외 3명
- 나. 회부일자 : 2016년 10월 20일
- 다. 상정일자 : 제207회 임시회 제1차 행정건설위원회(2016년 10월 26일)  
상정, 심사, 의결

## 2. 제안설명의 요지

□ 제안설명자 : 백남환 의원

### 가. 제안이유

마포구민의 범죄 없는 안전하고 편안한 생활환경 조성과 청소년 및 부녀자, 노약자 보호를 위하여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조직한 주민자율방범대를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나.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자율방범대의 정의 및 명칭 규정(안 제1조 ~ 제3조)
- 방범대의 조직 및 구성, 임무에 대해 규정(안 제4조 및 제5조)
- 방범대의 활동범위 및 신고 등 절차(안 제6조 및 제7조)
- 방범대연합회, 경비 지원 및 지도 감독(안 제8조 ~ 제10조)
- 방범대원의 교육 및 사기 진작을 위한 표창에 대한 사항 규정  
(안 제11조 및 제12조)

### **3. 검토보고 (전문위원 김은모)**

- 동(同) 조례안은 2016.10.20.~10.24.까지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동 조례에 대한 상위법 저촉여부를 검토한 바 별다른 문제점은 없으며, 법제처 질의회신(법제처-11-0201, 2011.6.30) 결과 자율방범대 필요경비 등을 지원하는 사무는 자치사무로 보고 있고,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7조제7호는 ‘범죄예방 및 선도에 관한 활동’ 또한 자원봉사활동의 범위에 포함시키고 있으며 같은 법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및 제18조(자원봉사단체에 대한 지원)등에서도 자원봉사활동의 의무와 주체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명시하고 있는 바, 우리 구에서도 자율방범대가 지역 치안을 위한 자원봉사활동의 범위로 보고 차량유지비 등 기본적인 활동지원비에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이번 조례를 제정하는 데는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되나, 다만, 방범초소 설치 지원에 대한 문제는 현재 방범 업무는 국가사무로써 상위법령이 제정된 이후 우리 구에서도 지원근거를 조례로 정하여 지원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요지 : 없음**

**8. 기타사항 : 없음**